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출항 등의 제한) 및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가 개정('22.10.18 공포, 제10조는 공포한 날 시행, 제24조는 공포 3년 후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조업한계(자제)선 인근 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하며, 어선검사 미수검 어선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출항 전 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 기재사항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교신가입 첨부서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한 전자적 확인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태풍경보·주의보, 풍랑경보 시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안 제4조, [별표1])
- 나.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안 제13조)
- 다. 조업한계(자제)선 인근 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 신설(안 제5조)
- 라. 어선출입항신고서 기재사항에 어선검사 유효기간 추가(안 제3조)
- 마. 수협 안전본부에 교신가입 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안 제10조)

바. 유의사항, 처리절차 등을 표기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업무 진행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17. ~ 4. 26.)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유효기간

제4조의 제목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의 기준 등)”을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항 제한”을 “출항 및 조업 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항이 금지된다”를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출항”을 “출항 및 조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의 장은 출어선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한 지침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부대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신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교신가입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본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등)”을 “(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제14조제3항 중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를 “조업보호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출항 및 조업 제한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1.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	모든 어선 출항 및 조업 제한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다. 어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해상에 기상예비특보 발표 또는 기상특보 발효를 확인하여 어선 안전관리를 할 것
2.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톤 (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시에는 30톤) 미만 어선 출항 및 조업 제한	
3. 폭풍해일주의보 폭풍해일경보	-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다. 어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해상에 기상예비특보 발표 또는 기상특보 발효를 확인하여 어선 안전관리를 할 것

비고

1.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예상향로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리고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3. 안전본부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기상특보의 내용과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등을 1시간마다 방송하여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 하며, 어선의 대피 상황을 4시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해양경찰서,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확인 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	----

어선 소유자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선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어선의 제원 (諸元)	선명	어선번호	총톤수
	허가업종(면허업종)	선적항	무선설비

어선검사 유효기간	
--------------	--

출입항 신고사항(평균조업일수: 일)

출 항							입 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조업 해역	입항예정		신고인 성명 (인)	확인 (인)	일시	장소	확인 (인)
				일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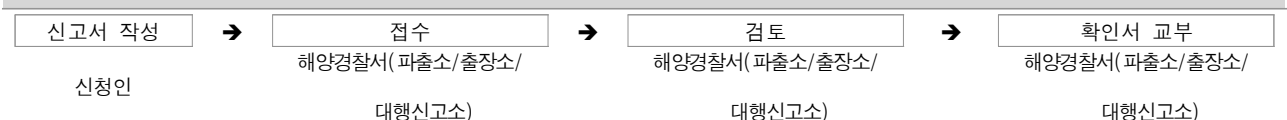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illegibl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최초 신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출어, 출입항 변동신고,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출입항 변동신고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출어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확인 번호	처리기간	즉시
어선	성명(법인의 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연락처		
선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록	선명	총톤수	선종	
	어선번호	마력	최대 승선원 수	명
사항	조업 업종	어업허가번호(어업·양식업 면허번호)		
	비고			

승선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기관장				
통신장				

「어선안전조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출소(출장소) 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행정처분
- 출어등록을 하지 않고 출어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한 경우 어업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어업허가 등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출어등록 대상
-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해양경찰서(파출소/출장소)	→	검토 해양경찰서(파출소/출장소)	→	등록증 발급 해양경찰서(파출소/출장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교신가입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확인 번호	처리기간	즉시
호출부호				
어선 소유자	성명(법인의 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비상연락처		
	주소			
선장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상연락처		
	주소			
어선 정보	선명	총톤수		
	어선번호	조업 업종		
	선적항	소속조합		

「어선안전조업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신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어선안전조업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무선국 허가증 사본 1부 2. 양식업면허증,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어획물운반선 또는 부속선의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과태료

- 교신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교신가입 대상

-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

처리절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 사항) 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 사항)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유효기간
제4조(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제한의 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① ----- ----- 출항 및 조업 제한-----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된다. 다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할 수 있다.	② ----- ----- ----- ----- ---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된다. ----- ----- --- 출항 및 조업을--.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0조(교신가입의 신청) ① 법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의 장은 출어선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한 지침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부대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교신가입의 신청) ① ---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신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1. 2. (생략)

② (생략)

제13조(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란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생략)

----- 교신가입신청서를

-----.

이 경우 안전본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다.

④ 중앙회장은 정기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 ⑦ (생략)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조업보호본부 -----

-----.

④ -----
----- 시장
----- · 군수 · 구청장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어선의 출항제한의 기준, 안전 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출항제한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1.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	모든 어선 <u>출항 금지</u>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다. <신설>
2.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톤 (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시에는 30톤) 미만 어선 <u>출항 금지</u>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다. <신설>
3. 폭풍해일주의보 폭풍해일경보	-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다. <신설>

비고

1.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예상항로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합정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

1]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출항 및 조업 제한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1.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	모든 어선 <u>출항 및 조업 제한</u>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다. 어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해상 예 기상예비특보 발표 또는 기상특보 발효를 확인하여 어선 안전관리를 할 것
2.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톤 (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시에는 30톤) 미만 어선 <u>출항 및 조업 제한</u>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다. 어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해상 예 기상예비특보 발표 또는 기상특보 발효를 확인하여 어선 안전관리를 할 것
3. 폭풍해일주의보 폭풍해일경보	-	가.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다. 어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해상 예 기상예비특보 발표 또는 기상특보 발효를 확인하여 어선 안전관리를 할 것

비고

1.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예상항로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합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리고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